

# 신주발행공고

2023년 12월 1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42,184,3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2. 자금 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
3.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9,550원  
(예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2024년 02월 29일 결정 예정)

##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신주 발행가격 산정 절차가 폐지되고 가격 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존 관행인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 ①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times (1-할인율)] / [1+(증자비율 \times 할인율)]$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1월 26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1월 23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②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times (1-할인율)$

구주주 청약 초일(2024년 03월 06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2월 29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위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

행가액으로 함.

③ 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text{차발행가액}, 2\text{차발행가액}], \text{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

5.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26일

6.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신주의 20%에 해당하는 28,436,86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 1주당 0.317893932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를 구주주의 배정범위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다.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제2조 4항에 따른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한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수(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 7.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

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2024년 02월 19일부터 2024년 02월 23일까지 (5거래일간)

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발행됨.

(i) 주주가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함.

(ii)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함. 단, 특별계좌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동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거래 및 계좌 대체 거래가 가능함.

#### 8. 청약기간(예정)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2024년 03월 06일 (1영업일)

나. 구주주 청약: 2024년 03월 06일부터 2024년 03월 07일까지 (2영업일간)

다. 일반공모 청약: 2024년 03월 11일부터 2024년 03월 12일까지 (2영업일간)

#### 9. 청약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대신증권(주)

나.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다.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10.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대신증권(주)

#### 11.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 대상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의 100%

12. 주금 납입 예정일: 2024년 03월 14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4. 신주 추가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6일

15.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해당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라.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본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